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06 제출연월일 : 2024. 10. 1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5제1항제4호 중 "사업 수행 실적이"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 실적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게 정 안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	취소) ①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	
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업 수행 실적이</u> 1년 이상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
없는 경우	<u>행 실적이</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 야 한다.
- 1. ~ 3. (생 략)
- 없는 경우
- 5. (생략)
- ②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u>사업 수행 실적이</u> 1년 이상 4.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u> <u>행 실적이</u> -----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